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정보 제공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로 확대(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8세”를 “13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 내용 ·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 내용 ·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u>8세</u>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① ----- ----- ----- ----- ----- <u>13세</u>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u>8세</u> 미만 아동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	2. ----- -- <u>13세</u>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